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8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장기재직휴가 부여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휴가 부여대상 및 일수 확대 등(안 제25조)

-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 2)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확대
- 3) 특별휴가 일수 확대(5일 → 8일)

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범위 내에서 해당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및 이월·저축 가능(안 제16조, 제28조)

다.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안 제19조)

라. 심리안정휴가 신설(안 제25조)

마.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경조사휴가 확대(안 별표5)

- 현행 10일의 배우자 경조사휴가를 다태아 출산 시 15일로 확대

바.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2년 미만인”을 “5년 미만인”으로, “2년 미만의”를 “5년 미만의”로, “2일”을 “3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만 40세”를 “40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봄”을 “계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봄”을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5일”을 “8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10년”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으로, “해당재직기간 중 10일”을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로, “미만 및”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로, “각각 20일”을 “30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⑯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제28조제1항 중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를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③ (생략) <u><신 설></u></p>	<p>제16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u> <u>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u> <u>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u> <u>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u> <u>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u> <u>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u> <u>다.</u></p>
<p>제19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법 제27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u>2년 미만인</u> 경 우로서 별표 4에 따라 <u>2년 미만의</u>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u>2일</u>을 더한다. ② ~ ④ (생략)</p>	<p>제19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 ① ----- -----. ----- ----- ----- <u>5년 미만인</u> --- ----- <u>5년 미만의</u> --- ----- <u>3일</u>----- -----.</p>
<p>제25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후 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 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p>	<p>제25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p>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단,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생 략)

③ (생 략)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1. -----

따른 -----

2. -----
----- 40세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분

2. (생략)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분)

⑤ ~ ⑪ (생략)

⑫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⑬ 의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

1. -----

----- 계산

2. (현행과 같음)

3. -----

----- 본다-----

⑤ ~ ⑪ (현행과 같음)

⑫ -----
----- 8일 -----

-----.

⑬ -----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
-----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
-----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일 -----

정한다.

⑭ · ⑮ (생략)

<신설>

제28조(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⑭ · ⑮ (현행과 같음)

⑯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제28조(연가의 저축) ①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9조제1항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 (일반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 (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출 산	배우자	<u>10</u>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9조제1항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 (일반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 (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5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출 산	배우자	<u>10</u>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관 계 법 령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2023. 7. 18.>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 7. 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전문개정 2010. 7. 15.][제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8로 이동 <2019. 4. 16.>]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3.>